

의안번호	2203867
의 퇴 인	조은희의원
회 답 일	2024.09.13.
추계번호	24D3678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5조의2(지역 자율방재단의 구성 등), 제75조의4(자율방재단의 소집 등), 제75조의6(교육 및 훈련 등), 제75조의8(자율방재단의 평가 등), 제75조의9(전국 자율방재단중앙회 및 시·도자율방재단 연합회의 구성) 신설	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재난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, 봉사단체, 재난 관련 업체, 전문가 등으로 자율방재단을 구성·운영할 수 있음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행정안전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평가 결과 우수한 자율방재단 및 시·군·구에 대하여 포상 및 지원을 할 수 있음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봉사활동 등에 국민 참여증진을 위하여 중앙회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으며, 중앙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 및 관리·감독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2	안 제75조의7(공유 재산의 무상사용 등) 신설	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자율방재단에 대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에도 불구하고 재난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음	재량규정

Ⅱ.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75조의2(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), 제75조의4(자율방재단의 소집 등), 제75조의6(교육 및 훈련 등), 제75조의8(자율방재단의 평가 등), 제75조의9(전국자율방재단중앙회 및 시·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) 신설	- 지역자율방재단의 근거법률을 변경하고 이미 수행되고 있는 수당 지급(일부 지역자율방재단), 교육 및 훈련, 포상금, 연합회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※ 현행 「자연재해대책법」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¹⁾,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²⁾ 설립, 시행령 제61조제2항에서는 소집 시 수당 지급³⁾ 등을 규정하고 있음
2	안 제75조의7(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) 신설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등(안 제75조의7 신설)

- 개정안에 따라 시·도지사 등이 자율방재단에 대하여 재난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, 공유 재산의 사용료 수입이 감소하는 등 재정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
 - 소방청에 따르면,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난 발생 시 주민대피, 재난안전선 설치

1)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6조(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, 봉사단체, 방재 관련 업체,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, 대응,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·대응·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·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2) 제66조의2(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) ①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(이하 "연합회"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

3) 시행령 제61조(소집 등)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등과 같은 복구지원, 사회재난과 관련하여 방역, 질서 유지 등 예방 및 대비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

-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을 위한 사무실 운영, 재난발생 시 피해복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중장비 대여 등이 필요하나 현행법에는 공유재산 무상사용 또는 대여에 관한 근거가 없음
- 다만, 재정수입 감소액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무실의 평균 면적 및 임대 수입 발생 여부, 중장비 종류 및 대여 수입 발생 여부, 임대 수입이 감소하는 사무실 수 평균 임대료 수입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- 참고로, 2023년 12월 말 기준 지역자율방재단원은 총 69,260명이고 읍면동 단위로 구성되어 운영 중이고 활동 건수는 36,111회이며, 소방청은 전국자율방재단 연합회에 연간 4,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assembly.go.kr